

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에 따른

주민지원사업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1. 사업명 :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보조
2. 교부대상 : 성동구청
3. 교부결정액 : 금이억삼천이백만원(₩232,000,000)

○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

교부처	보조사업명	교부액(원)	금회 교부액
		시보조금	
성동구	주민지원사업 보조금	232,000,000	232,000,000

○ 교부방법 :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

4. 예산과목

○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

-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, 클린도시 조성,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, 음폐수처리 자치구 보조사업,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, 자치단체자본보조

5. 교부조건

- 해당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을 결정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지원 사업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함
-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- 사업집행결과 잔액이 발생할 시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에 반납하여야 함
- 기타 관계법규 및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2014. 9.

서울특별시